

연구인재 역량강화 프로젝트 사업 시행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도내 소재 대학에서 석·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자에게 외부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수행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 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인재 역량강화 프로젝트’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인재”란 도내 소재 대학 석·박사과정의 재학생을 말한다.
2. “외부 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란 공공연구기관, 출연연구기관, 기타 민간연구소를 말하며, 세부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구 분	정 의
공공연구기관	• 국제기구/중앙정부/공공기관 등이 설립한 연구기관
출연연구기관	• 지자체에서 출연하여 설립한 연구기관
기타 민간연구소	• 민간기업/민간단체/개인 등이 설립한 연구기관

* 대학 및 교수 산하 연구소는 해당되지 않는다.

3. “공동연구”란 연구인재와 연구기관과의 협의한 연구주제로 수행하는 연구 활동을 말한다.
4. “지도교수”란 소속 대학의 연구인재와 연구기관을 매개한 자를 말한다.
5. “공동연구지원금(이하 지원금)”이란 연구인재가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기간 동안 지급하는 활동비 성격의 지원금을 말한다.

제3조(사업운영자) 연구인재 역량강화 프로젝트 사업 운영자는 도내 소재 대학 (산학협력단)에 한다.

제2장 연구인재 선발

제4조(선발분야) 인문사회, 기초과학, 응용과학 등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가 가능하고 지역의 미래산업 또는 지역 현안과 연관있는 분야로 특별한 제한은 없다.

제5조(선발인원) 27명 내외로 정하되, 예산 등을 고려하여 선발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지원자격) 사업에 선발되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부터 제4항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① 공고일 현재 도내 주민등록을 둔 도민
- ② 도내 소재 대학원 석·박사 정규학위과정 재학생(분교 가능)
- ③ 연구기관과 공동연구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된 자
- ④ 대학원 외 직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
 - 전업(Full-time) 학생 자격을 유지하고 학업·연구활동에 전념 / 취업활동 불가

제7조(지원서 접수) 도내 소재 대학(산학협력단)에서 소속 석·박사과정 재학생의 제8조(제출서류)에 명시한 제출서류를 받아 자체 심사를 통해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 공고 기간 내 공고문에서 정하는 장소에 직접, 일괄 접수하여야 한다.

제8조(제출서류) 사업 참가 신청 시 대학(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9호까지는 소속 대학 연구인재별로 작성하여 대학(산학협력단)에서 일괄 취합 후 제출한다.

1. 참여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추천서 (별지 제2호 서식)
3. 사업이행 각서 (별지 제3호 서식)
4. 지원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 연구기관명, 공동연구과제명 / 지도교수 책임하에 연구인재와 협의 후 확정
5. 이력서 (별지 제5호 서식)
 - 이력서에 기재한 사항에 대한 증빙서류 첨부할 것
6. 자기소개서 (별지 제6호 서식)
7. 연구활동계획서 (별지 제7호 서식)
8.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별지 제8호 서식)
9. 중복 수혜 금지 약약서 (별지 제9호 서식)
10. 주민등록등본, 재학증명서 (기타 첨부 사항)

제9조(선발 방법) ①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1차 서류심사(30%), 2차 면접심사(70%)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선발한다.

② 심사위원은 비공개로 선정하며 전문성 심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각계 연구분야

전문가, 대학교수 등을 심사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심사위원은 지원자의 출신 대학(원)과 연고가 없는 인사를 선정한다.

③ 심사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0조(선발 결과) ① 제9조(선발 방법)에 따라 취득한 합산 점수가 80점 이상인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한다. 다만, 동점자 발생 시 공공연구기관, 출연연구기관, 기타 민간 연구소 순으로 선발한다.

② 선발결과는 면접심사 후 7일 이내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

제11조(협약체결) ① 각 대학(산학협력단)은 사업 신청 시 확정된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협의한 후 협약을 체결한다.

② 협약 체결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공동연구과제 및 공동연구 참여 기간(주간 및 월간 참여시간 포함) 명시할 것 (학업과 연구활동 병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설정)
2. 안전 및 인권·권리 보호 등에 관한 사항
3. 공동연구 과제 설정 및 연구인재의 구체적 역할 등 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4. 대학(연구지원금 지원) 및 연구기관(연구참여 관리) 기관 간 역할 분담 사항
5. 그 외 공동연구 활동에 필요한 제반사항 일체

③ 협약 체결은 선발결과 공개일로부터 2개월 이내 완료하여야 한다.

④ 공동연구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지역대학과 공동연구소기관이 공동으로 책임진다.

⑤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사전 승인을 득한 경우에 한하여 연구기관 및 공동연구 주제를 변경하여 협약체결을 할 수 있다.

제3장 지원금 지원

제12조(교부신청) 선정결과 공고 후 7일 이내, 대학(산학협력단)에서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맞춰 작성하여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으로 공문을 통해 교부신청서를 제출한다. 교부 신청 시 지원금의 5%를 간접비 계상을 포함한 금액으로 요구한다.

제13조(지원기간 및 지원방법) ① 지원 기간은 지원 신청서에 기재한 공동연구 기간으로 한정하며, 최단 2개월, 최장 7개월 까지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석사과정 「2025년도 최저임금」, 박사과정 「2025년도 전라남도 생활임금」 기준에 준

하되, 공동연구 참여시간은 주간 최대 40시간범위(일 최대 8시간 이내) 이내에서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투명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 석·박사통합과정의 경우 2년 이하(최저임금 기준 적용), 3년 이상(전남도 생활임금 적용) 지급**

1. 공동연구 참여시간은 매월 연구기관에서 별지 13호 서식으로 작성·확인한 참여등록부 기준으로 정한다.
 2. 지원금은 제11조(협약체결) 제2항에 따라 연구기관과 협의한 시간범위(주 40시간, 일 8시간)이내에서 책정하여 지원하며, 협의한 시간(주, 일 단위)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월 인정 시간에 소급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당초 계획보다 공동연구 시간이 미달할 경우에는 그 비율만큼 감액하여 지급한다.
- ② 대학(산학협력단)은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매월 참여 실적 확인 후, 지원금을 익월초에 연구인재 개인명의 계좌로 지급한다.
- ③ 연구인재 지급계좌는 1인 1계좌를 원칙으로 한다.
- ④ 연구인재 개인 통장을 회수하여 소속 대학으로 재분배 등을 엄격하게 금하며, 사안 발생 즉시 연구인재는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신고해야 하고, 적발 시 소속 대학에 사업비 환수 및 지원 취소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교부금 정산) 소속 대학 연구인재들의 공동 연구 활동이 최종 완료 후 1개월 이내 별지 11호 서식에 맞춰 작성하여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으로 공문을 통해 정산보고서를 제출하고,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분을 반납한다.

제4장 통합 관리

제15조(학사일정 관리) 지도교수와 협의 하에 연구기관과 공동연구 일정을 확정해야 하며 연구 활동 중 학점 부족 등으로 졸업 불가 문제 등 불이익 발생 시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16조(사전 준비) 연구인재는 공동연구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금 지급 전에 청구할 수 없다.

제17조(보험 가입) ① 공동연구 활동 중 발생할 사고에 대비하여 참가하는 모든 연구인재는 연구지원금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보험 상품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상해사망·후유장해 각 1억원

2. 배상책임 1억원

② 제1항에 관한 사항은 대학(산학협력단) 책임하에 보험 가입 지도 및 가입여부 확인 후 공동연구활동에 임하도록 한다.

제18조(참여활동 관리) ① 소속 대학(산학협력단)에서는 제11조(협약체결) 제2항 제4호에 따라 연구인재의 공동연구 참여 등록부(별지 13호 서식)를 연구기관에 작성·관리하도록 안내하고 매월 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인재와 연구기관의 확인(서명 또는 날인)받은 참여 등록부 스캔본을 받아 연구지원금 지급 근거로 활용한다.
② 공동연구 활동은 협약체결한 연구기관에 한하여 활동이 인정되며, 중간에 연구기관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공동연구 주제는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승인을 득한 경우 변경 가능하다.

제19조(지원금 지급 중단) 공동연구 기간 중 다음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공동연구 역할 불이행·불성실, 포기, 중단 등 연구활동 의지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
2. 군입대, 임신, 휴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공동연구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3. 신청서에 기재한 공동연구기간을 연장한 경우(연장한 기간 동안)

제20조(지원금 환수) 다음 사유에 해당할 경우 기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허위증명을 사용한 사실이 판명된 경우 전액 환수한다.
2. 공동연구 종료 후 2개월 이내 또는 결과보고 연장 승인 후 제출기간 내 제21조(결과보고)에 규정한 연구 성과물을 미제출할 경우 지원금의 50%의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한다.
3.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공고문에 중복 수혜가 불가하다고 명시한 사업에 중복으로 수혜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전액 환수한다.
4. 제19조(지원금 지급 중단)에 따른 지원금 환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가. 지원기간의 1/3 이내 지원금의 70% 환수
 - 나. 지원기간의 1/3 이 경과한 경우 연구결과보고 후 지원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제5장 결과보고 및 사후관리

제21조(결과보고) 공동연구 활동 기간 중 발생한 실적에 한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공동연구 활동 종료 후 2개월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결과보고 제출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승인을 받아야한다.

1.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1부(별지 제12호 서식)

가. (논문)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또는 국제학술지 논문(SSCI, A&HCI, SCIE, SCOPUS) 게재(예정)증명서

나. (기타) 특허, 저서, 학술대회 참가 등 증빙자료

*** 사사표기(2025년도 전라남도 재원으로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지원을 받아 수행됨)**

제22조(사후관리) ①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본 사업 참가자 간 인적교류 및 연구·진로에 대한 정보공유의 장을 마련할 때 연구자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② 성과공유회, 우수 사례발굴 등을 통해 연구 활동에 배어난 실적을 거둔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사업 종료 이후에도 연구인재의 지역사회를 위해 자원봉사 등 공헌활동에 항상 고민하고 실천하여야 한다.